

경 영 공 시

본 농(축)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아 래

1. 공시사유 : 농업협동조합법 제145조제2호에 의한 조합감사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(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5호)

2. 공시내용

- 대 상 : 팀장 김○○
- 경 위 : 2016년 귀속분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의한
가산세 부과
- 주요내용 : 팀장 김○○ 견책
- 수지에 미치는 영향 : 14,869천원의 손실발생 예상

2017년 8월 25일

예천농업협동조합장

